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제목 "(실무위원회의 구성)"을 "(위원의 임기)"로 하고 동조에 "위원회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"를 신설하며 동조의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제목 "(실무위원회의 기능)"을 "(회의 및 의사)"로 하고 "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 한다"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항및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제목중 "(실무위원회 간사)"를 "(간사)"로 하고 동조 제1항중 "실무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.

제8조(수당)중 "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"을 "위원회 위원중"으로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중 "실무위원회의 운영"을 "위원회의 운영"으로 하고 "실무위원회의 심의를"을 "위원회의 의결을" 로 하며 "실무위원"을 "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6 】 백석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3. 8.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1. 우리군 백석면 도시계획구역의 변경(재정비)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결정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1.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사항

가. 위치 :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, 오산리 일부

나. 면적 : 3.05㎢(기존 도시계획구역)

다. 재정비 내역 (용도지역 상황)

구 분	면 적 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합 계	3,050,000	-	3,050,000	경기도고시
일반주거지역	350,000	146,000	494,400	제 77-11 호
일반상업지역	-	33,200	33,200	
생산녹지지역	920,000	59,500	860,500	
자연녹지지역	1,780,000	120,100	1,659,900	

백석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

양주군수가 제출한 백석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.

백석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회의견

도시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백석면 방성리, 오산리 일부로서 기존의 전체 도시계획 면적 3.05㎢등 총 179,600㎡를 일반 주거지역 146,000㎡, 일반상업지역 33,200㎡등 총 179,600㎡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 및 주위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계획되었으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향후 재조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함.

첫째, 백석면사무소, 백석지서, 백석국민학교, 백석농협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거지역이 확대되도록 하고

둘째, 백석면사무소 옆 자연공원은 누대로 집단취락 지역으로 형성된 곳으로 가능한 한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.

【 7 】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5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ㅇ 지방재정법 제77조1항

ㅇ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

주요골자

구 분	합 계	당 초	추 가
취 득	- 토지 : 22필지 60,769㎡ - 건물 : 5동 915.8㎡	- 토지 : 5필지 16,951㎡ - 건물 : 4동 485.8㎡	- 토지 : 17필지 43,818㎡ - 건물 : 1동 430㎡